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11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여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경신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3. 접수 제25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8. 9.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나. 합병 전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2014. 2. 4. 밀양시 D 대 37㎡ 토지와 합병되었는데, 합병 전 위 토지에 관하여도 접수일자와 번호가 동일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있었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10. 10. 접수 제30966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8. 23. 접수 제25730호로 201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2018. 4. 5. 'B'에서 'F'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2. 10. 접수 제3383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7. 8. 23. 접수 제25730호로 201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22. 10. 17.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약 10년간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매도인인 E의 동의를 얻어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3. 접수 제2573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C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므로 C,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인 E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밀양시 G 대 553㎡

2. 밀양시 G

[도로명주소] 밀양시 H

위 지상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위아스팔트씰글 마감지붕 단층

단독주택 99.58㎡, 끝.

- 1) 소장의 청구원인 등 기재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8. 23. 접수 제25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